

「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이상호 의원 외 16인

2. 제안이유

- 농어업과 농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및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 및 농어민의 책무(안 제3조)
-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및 지급 제외 대상(안 제4조~제5조)
- 농어민수당 지급액, 절차 등(안 제6조~제8조)
- 농어민수당위원회 설치 등(안 제9조~제10조)
- 평가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
-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
-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「농지법」, 「산지관리법」,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, 「수산업법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의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농어민수당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제외 대상자에 관한 사항으로, 「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」의 지급 대상과 제외대상 사항의 일치를 통해 대상자 및 제외자의 선정 또는 제외 기준을 명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- 안 제9조와 제10조는 구미시 농어민수당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,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·지급 시기, 홍보 등 전반적 사항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의 설치로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행정 집행의 효율성과 신청·심의·선정 절차의 편의를 위해 청년·중년층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“경상북도 모이소1)”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1) **경상북도 모이소**: 경상북도의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,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농어민 수당 신청,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, 임업인 원클릭 서비스 등 모바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경상북도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